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49

발의연월일: 2024. 8. 8.

발 의 자:문금주·허종식·한민수

강준현 · 모경종 · 어기구

조인철 • 황정아 • 오세희

채현일 · 서삼석 · 위성곤

정동영 • 이정문 • 이광희

장종태 • 문대림 • 박해철

김태선 • 전진숙 • 김영배

의원(2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소멸 위험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 업까지 확대하며, 특정 용도로의 과도한 운용을 금지 및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함(안 제23조).
- 나.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확대함(안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 다.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비 부족 해소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 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집합투자 기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 라. 2031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1조원"을 "3조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조성 등을"를 "조성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없다.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 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u>1조원</u>	1 <u>3</u> 조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①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	1
시설 <u>조성 등을</u> 위한 시·도	조성과 제도 및 프로그
에 대한 재정지원.	<u>램 운영 등을</u>
	–.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	2
시설 <u>조성 등을</u> 위한 시·군	조성과 제도 및 프로그
•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u>램 운영 등을</u>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제1호의 용도로 운용
	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
	구에 출자할 수 없다.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생 략)

②제22조부터제29조까지의개정규정은이 법 시행일부터2031년12월31일까지 효력을가진다.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 음) <삭 제>